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 [공통]

THE
EST

원주 | 동문 디 이 스트
초 혁 신 도 시

※ 본 안내문은 2023.05.10.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세대당 1회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 • 당첨자로 선정 시 향후 특별공급 신청 불가(본인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자격 요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비입주자	유형별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의 500%	
장기 해외체류 시 국내거주 인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가능.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유형별 기본 자격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
원주시(강원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유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